

「로봇분야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국내 로봇기업의 수출 증진 및 해외인증 비용 경감을 위하여 로봇 분야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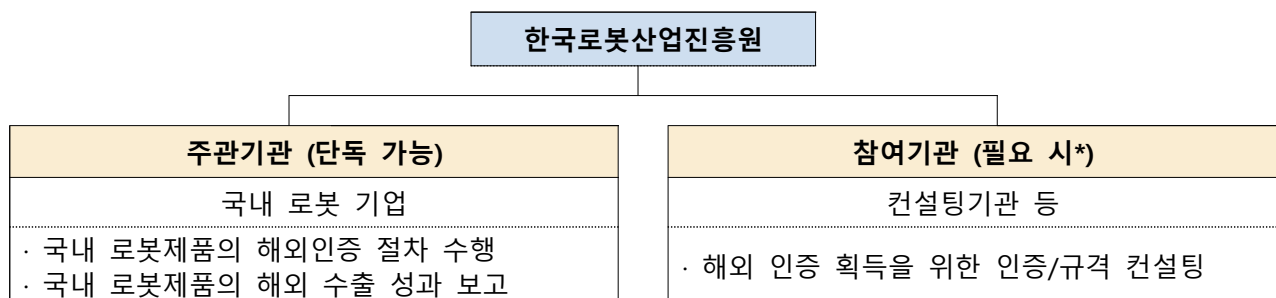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국내 로봇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국내 로봇의 수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국내 로봇의 글로벌 기술 신뢰도 확보 지원
- (수행기간) 협약일 ~ '26. 11. 30. (약 4개월)

□ 추진체계



* 컨설팅 지원 신청 시, 컨설팅 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포함할 것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로봇의 해외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재원 지원

구 분	세부항목 (예시)
가. 인증비	○ 해외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 (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나. 시험비	○ 해외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다. 컨설팅비	○ 해외인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기술 분석료(부적합 원인분석 등) 등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총 280,000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13.2% 이상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25.0% 이상 (대기업) 총사업비의 50.0% 이상

- *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 등에 따라 최종 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계상

3.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 신청자격

- 국내 로봇기업 중 로봇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컨설팅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 중이거나 신규로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로봇기업"이란 사업자 등록증에 로봇 관련 종목이 포함된 기업
 - * 단, 로봇제품 개발을 통한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은 로봇기업으로 인정

□ 지원요건

- 지원기업은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지원기업은 국내 로봇 제조 기업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국내에 위치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종목」 상 로봇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종목」 상 로봇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시, 자체 제작한 로봇 제품에 대한 개발 및 판매 실적을 입증하여야 함
- 인증의 대상이 로봇제품이어야 함
 - 제품의 분류가 통계청의 「로봇산업분류」* 상 대분류 01, 02, 03, 04에 해당할 것
 - * 붙임 2(로봇산업분류) 참조
- 획득 인증이 로봇제품을 위한 규격에 의거하여야 함
 - 획득 인증이 로봇제품을 위한 규격 혹은 로봇 제품 수출 시 필수적인 규격* 에 의거하여야 함
 - * 붙임 3(로봇 관련 규격) 참조
 - 인증비 이외의 컨설팅비, 시험비도 동일하며 그 외 규격은 평가 위원회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컨설팅비와 함께 지원 시 컨설팅업체와 로봇 기업이 선정평가에 공동 참석하여 대응이 가능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이 가능한 기업

□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국비지원금 환수 가능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 단, 사업 공고일 기준 인증컨설팅 및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련 참여제한 기업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전제외대상 및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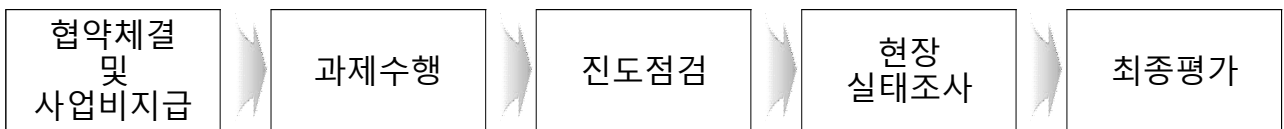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 5년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p>이때, 사업개시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p> <p>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p> <p>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p>	
조치	<p>○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p>	<p>○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p> <p>○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p> <p>-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p>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표2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4. 선정절차 및 기준

□ 과제 수행 절차



□ 과제 선정 절차



* (서류심사) 주관기관의 재무상태 검토 및 제출 서류 완비 여부 등 검토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선정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 발표(발표+질의 응답) 및 제출한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적정성 (30)	◦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5
	◦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타당성	15
사업성 (30)	◦ 해외 시장분석 및 진출 전략의 구체성	15
	◦ 사후 성과 활용 계획의 타당성	15
수행능력 (30)	◦ 수행기관의 역량(인력, 전문역량, 인프라 등)	15
	◦ 유사 해외 인증·특허·재산권 등 획득 실적	15
사업비(10)	◦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등	10
합 계		100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26. 6. 1.(월) ~ 6. 19.(금), 16시까지 <20일 간>
- (접수기간) ‘26. 6. 1.(월) ~ 6. 19.(금), 16시까지 <20일 간>

※ [주의사항]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 온라인접수 마감 시간까지 접수 완료 및 서류제 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단, 시스템 오류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및 시스템오류 증빙(화면 캡처)을 담당간사 이메일로 제출 시 인정

□ 신청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 신청(오프라인 제출 불요(不要))
 - 온라인 과제 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 「과제신청」의 각 항목 입력 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된 서류 일체는 사업 선정 시 원본 제출 예정이므로 별도 관리 필요

- 사업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 사업내용 관련 문의 : 표준인증팀 박지은 선임(053-210-9662, pje@kiria.org)
 - ※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에 문제가 있을 시 담당 간사에게 연락바람
- 시스템관련 문의 : 고객센터(호원소프트)(070-4047-7287) / 사업총괄팀 이용래 수석 (053-210-9572)
- 주의사항
 - ①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 ②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 ③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및 부수

※ 서류 접수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기관별 제출 여부	
				주관	참여
1	사업계획서	양식1	날인된 PDF파일 1부	○	X
2	발표자료(PPT 또는 PDF)	자유양식	1부	○	X
3	현금출자 요약서	양식2	날인된 PDF파일 1부	○	X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1부	○	○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외, 신청일 1개월 내 발급)	-	1부	○	○
6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	2024년 및 2025년	○	○
7	기업신용평가보고서(개인사업자 외)	-	1부	○	○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
9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양식3	날인된 PDF파일 1부	○	○
10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양식4	날인된 PDF파일 1부	○	○

1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5	날인된 PDF파일 1부	○	○
12	참여의사 협약서	양식6	날인된 PDF파일 1부	○	○
13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1부	○	○
14	사업비 적정성 검증 자료 - 상세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등	자유양식	각 1부	○	X
15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양식7	날인된 PDF파일 1부	○	X
16	기타 필요서류 - 既 획득한 해외 특허인증, 수출 계약서, 수출 전담 조직도, 영문 카달로그 등	자유양식	필요시	○	X

- *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과 업태에 로봇기업임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로봇 제작 및 판매 실적 등 로봇 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

6. 추진 일정(안)

추진절차	추진일정	주요내용
지원과제 모집 공고 및 접수	'26. 6. 1.(월) ~ '26. 6. 19.(금)	- 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공고
↓		
지원과제 선정 평가	'26. 7월 중	- 서류심사 및 재무건전성 검토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현장평가 (필요시)
↓		
지원과제 선정발표	'26. 7월 중	- 산업부 결과보고 및 선정결과 통보
↓		
이의제기 접수	'26. 7월 중	- 이의제기 접수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6. 8월 초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 11. 30(월)	- 제품 시험/인증/컨설팅 등
↓		
진도점검	'26. 9월 및 10월(예정)	- 필요 시 현장점검
↓		
결과평가	'26. 12월 중	- 과제성과 취합 및 결과보고 - 과제비 정산

- * 일정은 신청 규모,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할 수 있음

7.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관리지침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기타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8.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술기반AX본부 표준인증팀

- 박지은 선임, 053-210-9662, pje@kiria.org

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고객센터 : 070-4047-7287 / KIRIA 이용래 수석 : 053-210-9572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 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산출물*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되어야 함

* 해외인증서, 시험성적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 전담기관은 과제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주관 기관 및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임

붙임 1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1부.

붙임 2 로봇산업분류 1부.

붙임 3 로봇 관련 규격 1부.

【별표 제1호】

인증제도별 정부지원금 인정 기준

(○ : 인정)

해당 국가	인증명	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	
				인증	시험
유럽	CE	전자기기 (LVD, EMC, RED)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중 1개 시험	○	○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중 2개 시험	○	○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시험	○	○
		기계 (MD)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	○
		의료기기 (MDR)	CLASS II	○	○
		EU RoHS	Cat.8, Cat.9, Cat.11	○	○
미국	NRTL	공산품	부품 또는 제품 등 기기	○	○
	FCC	Declaration / Verification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Certificate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
중국	CR	로봇	인증유형A (공장심사 X)	○	○
			인증유형B (공장심사 O)	○	○
고비용인증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0,000천원 소요되는 제품)				○	○

붙임2

로봇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코드	코드명	코드	코드명	코드	코드명
1	제조업용 로봇 제조	11	이적재용 및 핸들링 로봇 제조	111	팔레타이징 로봇 제조
				112	자동차 제조용 물품 핸들링 로봇 제조
				113	전기·전자제품 제조용 물품 핸들링 로봇 제조
				114	웨이퍼 제조용 물품 이송 및 운반 로봇 제조
				115	표시장치(디스플레이) 제조용 물품 이송 및 운반 로봇 제조
				119	기타 이적재용 및 핸들링 로봇 제조
		12	공작물 장착 및 탈착용 로봇 제조	121	금속 부품 장착 및 탈착용 로봇 제조
				122	플라스틱 사출공정 탈거 및 취출용 로봇 제조
				129	기타 공작물 장착 및 탈착용 로봇 제조
		13	용접 및 납땜용 로봇 제조	131	아크 용접용 로봇 제조
				132	스폿(점) 용접용 로봇 제조
				133	전자부품 납땜용 로봇 제조
				139	기타 용접 및 납땜용 로봇 제조
		14	조립, 분해, 접착, 마킹 및 라벨링용 로봇 제조	141	부품 조립 및 분해 로봇 제조
				142	접착 및 봉합 처리 로봇 제조
				143	마킹 및 라벨링 처리 로봇 제조
				144	인쇄회로기판 표면 실장용 로봇 제조
				149	기타 조립 및 분해용 로봇 제조
		15	물품 연마, 절단 등 가공 및 표면처리용 로봇 제조	151	연마 및 끝말림(deburring) 제거용 로봇 제조
				152	절단용 로봇 제조
				153	도장용 로봇 제조
				154	단조 및 압형용 로봇 제조
				159	기타 물품 가공 및 표면처리용 로봇 제조
		16	생명공학기술 공정용 로봇 제조	161	생물 세포조작, 신약합성 및 분석용 로봇 제조
				169	기타 생명공학기술 공정용 로봇 제조
		17	측정, 검사, 시험용 로봇 제조	171	성능, 수명, 치수 및 외관 측정, 검사, 시험, 평가용 로봇 제조
				179	기타 측정, 검사, 시험용 로봇 제조
		19	기타 제조업용 로봇 제조	191	협동 로봇 제조

2	전문 서비스용 로봇 제조		192	제조공정 교육훈련용 로봇 제조	
			199	기타 달리 구분되지 않은 제조업용 로봇 제조	
		21	사업시설 관리용 로봇 제조	211	사업시설 청소용 로봇 제조
				212	사업시설 안내용 로봇 제조
				219	기타 사업시설 관리용 로봇 제조
		22	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제조	221	경비 및 감시용 로봇 제조
				222	화재 및 재난 대응용 로봇 제조
				223	해양, 우주공간 및 원자력 시설용 로봇 제조
				224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제조
				229	기타 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제조
		23	의료용 로봇 제조	231	수술용 로봇 제조
				232	재활훈련용 로봇 제조
				233	의료진단 및 검사용 로봇 제조
				239	기타 의료용 로봇 제조
		24	건설용 로봇 제조	241	관로 및 배관시설 유지, 관리용 로봇 제조
				242	토목·건물·전기 공사 검사용 로봇 제조
				249	기타 건설공사용 로봇 제조
		25	군사용 로봇 제조	251	군사시설 경계감시용 로봇 제조
				252	전투용 로봇 제조
				253	군사용 비행정찰 로봇 제조
				254	군수지원용 로봇 제조
259	기타 군사용 로봇 제조				
26	농림어업용 로봇 제조	261	작물재배 및 축산용 로봇 제조		
		262	임업 및 어업용 로봇 제조		
		269	기타 농림 어업용 로봇 제조		
27	여가 및 오락 서비스용 로봇 제조	271	오락장용 로봇 제조		
		272	공연용 로봇 제조		
		273	테마파크용 로봇 제조		
		279	기타 여가 및 오락 서비스용 로봇 제조		
29	기타 전문서비스용 로봇 제조	291	배달, 물품취급 및 서빙용 로봇 제조		
		292	전문요리용 로봇 제조		
		293	연구용 로봇 제조		

				299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서비스용 로봇 제조
3	개인 서비스용 로봇 제조	31	가사용 로봇 제조	311	가사용 로봇청소기 제조
				312	가정 경비용 로봇 제조
				319	기타 가사용 로봇 제조
		32	개인 건강관리용 로봇 제조	321	개인 재활훈련용 로봇 제조
				322	개인 간병용 로봇 제조
				323	개인 이동 및 거동 보조 로봇 제조
				329	기타 개인 건강관리용 로봇 제조
		33	개인 여가·오락·취미용 및 감성교감 로봇 제조	331	개인 오락 및 취미용 로봇 제조
				332	감성교감 로봇 제조(소셜로봇)
				333	오락용 무인비행 로봇 제조
				334	개인 탑승형 이동 로봇 제조
				339	기타 개인 여가용 로봇 제조
		34	교육용 로봇 제조	341	콘텐츠 기반 교육용 로봇 제조
				342	교보재용 로봇 제조
				349	기타 교육용 로봇 제조
		39	기타 개인서비스용 로봇 제조	390	기타 개인서비스용 로봇 제조
		4	로봇 부품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41	로봇 구조용 부품 제조
412	로봇용 주행 및 이동장치 제조				
413	로봇용 말단장치(엔드이펙터) 제조				
419	기타 로봇 구조용 부품 제조				
42	로봇 구동용 부품 제조			421	로봇용 전동기(모터) 제조
				422	로봇용 전동기(모터) 드라이버 제조
				423	로봇용 감속기 제조
				424	로봇용 동력전달장치 제조
				425	로봇용 유압(공기압)식 구동장치 제조
				426	로봇용 인공근육 구동장치 제조
				429	기타 로봇 구동용 부품 제조
43	로봇용 감지(센싱)장치 및 관련 부품 제조			431	로봇용 시각센서 및 영상처리 모듈 제조
				432	로봇용 청각 및 후각 센서 제조
				433	로봇용 역각 센서 제조
				434	로봇용 촉각 및 압력 센서 제조

			435	로봇용 가속도 및 속도 센서 제조
			436	로봇용 거리감지 센서 제조
			437	로봇용 위치감지 센서 및 네비게이션 모듈
			439	기타 로봇용 감지센서 부품 제조
	44	로봇 제어용 부품 제조	441	로봇용 임베디드 구동(모션)제어기 제조
			442	로봇 PC형 구동(모션)제어기 제조
			443	공정자동화 및 로봇 통합 구동(모션)제어기 제조
			444	로봇 제어용 시스템온칩 제조
			445	로봇용 사용자 접속장치(인터페이스) 제조
			449	기타 로봇 제어용 부품 제조
	45	로봇용 작동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451	로봇용 운영체제 개발 및 공급
			452	로봇용 미들웨어 개발 및 공급
			453	로봇용 개발도구 개발 및 공급
			454	로봇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455	로봇용 시뮬레이터 개발 및 공급
			459	기타 로봇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49	기타 로봇부품 제조	491	로봇용 전원 공급장치 제조
			492	로봇용 케이블 제조
			493	로봇용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
			499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로봇용 부품 제조

인증	규격	표준
CE (유럽)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 EN ISO 12100
		- EN ISO 10218-1
		- EN ISO 10218-2
		- EN ISO 13482
		- ISO/TS 15066
		- ISO/TR 20218-1
		- ISO/TR 20218-2
		- EN ISO 13849-1
		- EN IEC 62061
	- EN 61800-5-2	
	Low Voltage Directive(LVD) 2014/35/EU	- EN 61010-1
		- EN 62368-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Directive 2014/30/EU	- EN IEC 61000-6-1
		- EN IEC 61000-6-2
		- EN IEC 61000-6-3
		- EN IEC 61000-6-4
		- EN IEC 61800-3
	Radio Equipment Directive 2014/53/EU	- EN 50385
		- EN 50401
		- EN 50566
	ATEX Directive 2014/34/eu	-
	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 (MDD, MDR)	- IEC 60601-1
		- IEC 80601-2-77
		- IEC 80601-2-78
		- IEC TR 60601-4
	Functional Safety	- IEC 61508-1
		- IEC 61508-2
- IEC 61508-3		

NRTL	-	- UL 1740
		- UL 3300
		- UL 3320
		- ANSI/RIA R15.06
		- ANSI/RIA R15.08
		- NSF 169
CCC	-	- GB 1129.1
		- GB 5226.1
		- GB/T 15706
		- GB/T 12642
		- GB/T 16439
		- GB/T 7344
		- GB/T 11281
		- GB/T 30819
		- GB/T 30242
		- GB/T 20521
		- GB/T 20522
		- GB/T 19399
		- GB/T 204383
		- GB/T 7947
		- GB/T 4205
		- GB/T 29824
		- GB/T 29825
		- GB/T 11291.2
		- GB/T 26153.1
		- GB/T 4943.1
- GB/T 5226.1		
- GB/T 15706		
- GB/T 16855.1		

*이 외 로봇과 간접 관련된 규격의 경우 사업 간사와 선정평가위원회의 검토 대상이며, 로봇 수출에 필요한 인증 및 규격임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소명하여야 함